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4032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B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로서, 2022. 2. 9.

당시 피해 아동 ○○○(만 5세, 이하 '피해 아동'이라 한다)이 속한 C반 담임교사였다.

나. 피해 아동은 2022. 2. 9.경 인근 D광장 내부의 놀이터에 설치된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에서 떨어져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22. 11. 25. 원고가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태만히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구 영유아보육법(2023. 12. 26. 법률 제19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4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3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을제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아동에 대한 보육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점, 원고가 아동들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 아동이 이를 어기고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구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2항은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호는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피해 아동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미숙하다. 또한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이와 같은 영유아를 보호·양육하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원고로서는 보육시간 중 영유아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영유아가 야외 놀이시설에서 놀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놀이기구 등에서 추락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놀이기구는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구조물 사이를 긴 봉이 연결하고, 그 봉에 달려 있는 손잡이들을 차례로 잡고 건너편 구조물로 넘어가도록 설계된 놀이기구로, 손잡이는 지상 228~250cm 가량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손잡이와 봉 하단에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 이 사건 놀이기구 표지판에는 이용연령이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놀이기구가 아동이 이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연령이나 손잡이의 높이 등에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만 5세 아동으로서는 이를 이용하던 중 얼마든지 추락하여 큰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보육교사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놀이기구 가까이에서 아동들을 지켜보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중지시키거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지 않았다.

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아동들이 이 사건 놀이기구에서 노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 아동의 경우 이 사건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촬영해주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원고로서는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영유아들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였어야 하고, 단지 아동들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라) 원고가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는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원고의 주의의무 정도 및 그네의 위치와 이 사건 놀이기구 위치가 멀지 않아 원고로서는 아동들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혼자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 아동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현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놀이기구 이용연령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 원고는 당시 13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반별 정원기준(20명)을 충족하고 남는다는 점 등을 들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

정만으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달리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영유아보육법(2023. 12. 26. 법률 제19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24. 6. 25. 대통령령 제34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권한의 위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47조제1호			
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끝.